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1. 7. 13.

사회건설위원회

### 1. 審査經過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6월 21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6월 22일

라. 상정일자 :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회의(2011년 7월 4일)  
상정 의결

### 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 설명자 : 복지국장 오봉환)

#### 가. 제안이유

-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,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명칭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2조)
-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문제의 예방 및 상담, 건강가정유지 프로그램 개발 등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(안 제3조)
- 센터의 조직으로 센터장, 가정상담팀, 가정교육팀,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도록 함(안 제5조)

-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- 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하되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
- 센터를 운영하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정함(안 제11조)
- 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)

### 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(專門委員 : 박종성)

- 본 조례안은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치단체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정문제 상담 및 치료, 건전가정 유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, 가정생활문화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은 센터의 설치 및 명칭, 기능, 시설, 조직, 위원회 운영, 자원봉사자 및 강사의 활용, 지도감독, 비용지원 등 총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.
- 본 조례안은 사회환경 변화로 인하여 가족기능이 약화되면서 이혼, 가정폭력 등 가정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「건강가정기본법」이 제정·시행되고 자치단체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,
- 이에 따라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필요한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강가정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례를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 4. 審査結課 : 原案 可決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64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1. 6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「건강가정기본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건강가정기본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함(안 제1조)
- 나.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(안 제3조)
-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·상담 및 치료
  -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
  - 구 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
  -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
  -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
  -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
- 다. 센터는 센터장, 가정상담팀, 가정교육팀,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.(안 제5조)
- 라.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(안 제9조)
- 마.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.(안 제11조)
- 바.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.(안 제13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강가정기본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필요없음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(2011.5.19 ~ 6. 8, 20일간)결과 : 의견없음

(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사무 없음

붙임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센터의 설치 및 명칭)**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② 센터 명칭은 “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”로 한다.

**제3조(기능)**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·상담 및 치료
2.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
3.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
4.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
5.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
6.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

② 제1항의 기능 중 구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.

**제4조(시설)**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정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·상담실·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**제5조(조직)** ① 센터는 센터장, 가정상담팀, 가정교육팀,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(겸직)으로 할 수 있다.

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,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.

**제6조(위원회 운영)**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센터 운영 관련 공무원과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.

**제7조(위원회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운영 계획의 수립·평가에 관한 사항
2. 건강가정 프로그램의 개발·평가에 관한 사항
3.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**제8조(자원봉사자)**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.

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,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.

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9조(강사)**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.

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0조(운영)**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.

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.

1.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
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
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**제11조(수탁자의 의무)**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위·수탁약정서,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주민참여)**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

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3조(지도감독)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·점검할 수 있다.

제14조(센터의 지원) 구청장은 센터 설치·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.